함께,약속 DB손해보험

피보험자 질문서 [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]_국내

설계번호		청약일자	

◎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◎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, 특히 알린 내용이 「중요한 사항」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,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◎ 반면, 보험설계사 등이 임의로 질문표를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.
◎ 모든 질문사항은 필수사항 이므로 빈칸 없이 채워주시고 만약 질문에 해당사항이 안되더라도 '아니오'에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.

「중요한 사항」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, 일부 보장 제외, 보험금 삭감,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.

보험계약자		피보험자	□ 계약자와 동일

보험가입 정보

피소대응 소송제기	□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에 제출한 「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신청서」와 **동일**

◈ 보상비율 : **90%**
◈ 면책기간 : 「소송제기 및 특허심판보장 청구제기」담보에 한하여
(보험기간 1년 가입시) 가입 **90일 이후** 보장개시 / (보험기간 3년 가입시) 가입 **180일 이후** 보장개시

보험 목적물 정보

□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에 제출한 「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신청서」와 **동일**

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

1. 보험가입 시점 기준, 유효한 특허권 또는 상표권, 실용신안, 디자인권, 임치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까? □ 예 □ 아니오
※ 보험 목적물에 대한 권리기간이 경과된 이후 개시된 법률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법률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.
보험기간 중 해당 목적물의 권리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권리기간 갱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현재 진행중인 특허권 또는 상표권, 실용신안, 디자인권, 임치기술과 관련된 분쟁이 있습니까? □ 예 □ 아니오

3. 최근 5년 이내 특허권 또는 상표권, 실용신안, 디자인권, 임치기술과 관련된 소송이력(최종판결)이 있습니까? □ 예 □ 아니오

4. 상기 3.항에서 "예"라고 대답한 경우 아래 내용에 대하여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최근 5년 이내 소송이력이 있는 경우 : □ 승소 □ 패소 □ 진행중
- 최근 1년 이내 소송이력이 있는 경우 : □ 승소 □ 패소 □ 진행중

◈ 보험설계사는 계약전 *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소송이력 등 중요한 내용을 * 구두 로만 알릴 경우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* 해지 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◈ 보험계약자 * 000 주식회사 는(은) 보험설계사 * 홍길동 (으)로부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시의 효과(계약해지, 보장제한, 보험금 미지급 등)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,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*** 부분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덧글쓰기**

20 년 월 일

DB손해보험주식회사 귀중

*보험계약자 : (인)

*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: (인)

담당자		홈페이지	www.idbins.co.kr

회사보관용

함께,약속 DB손해보험

피보험자 질문서 [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] 해외

설계번호		청약일자	

◎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 질문들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◎ 만약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, 특히 알린 내용이 「중요한 사항」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,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◎ 반면, 보험설계사 등이 임의로 질문표를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.
◎ 모든 질문사항은 필수사항 이므로 빈칸 없이 채워주시고 만약 질문에 해당사항이 안되더라도 '아니오'에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.

「중요한 사항」이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, 일부 보장 제외, 보험금 삭감,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.

보험계약자		피보험자	□ 계약자와 동일

보험가입 정보

피소대응 소송제기	□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에 제출한 「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신청서」와 **동일**

◈ 보상비율 : **90%**
◈ 면책기간 : 「소송제기」담보에 한하여
(보험기간 1년 가입시) 가입 **90일 이후** 보장개시 / (보험기간 3년 가입시) 가입 **180일 이후** 보장개시

보험 목적물 정보

해외등록 특허 / 상표	등록국가	□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에 제출한 「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 신청서」와 **동일**
	등록번호	

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

1.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 또는 획득한 특허권 또는 상표권이 맞습니까? ※ 본 상품은 특허 또는 상표가 등록된 해당 국가의 법원에 접수되거나 공소제기된 소송절차 이후에 발생한 법률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며, 대한민국 법원은 제외됩니다.	□ 예 □ 아니오
2. 현재 진행중인 특허권 또는 상표권과 관련된 분쟁이 있습니까?	□ 예 □ 아니오
3. 최근 5년 이내 특허권 또는 상표권과 관련된 소송이력(최종판결)이 있습니까?	□ 예 □ 아니오

4. 상기 3.항에서 "예"라고 대답한 경우 아래 내용에 대하여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최근 5년 이내 소송이력이 있는 경우 : □ 승소 □ 패소
- 최근 1년 이내 소송이력이 있는 경우 : □ 승소 □ 패소

◈ 보험설계사는 계약전 *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과거의 소송이력 등 중요한 내용을 * 구두 로만 알릴 경우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향후 계약이 * 해지 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◈ 보험계약자 * 000 주식회사 는(은) 보험설계사 * 홍길동 (으)로부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시의 효과(계약해지, 보장제한, 보험금 미지급 등)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,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*** 부분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덧글쓰기**

20 년 월 일

DB손해보험주식회사 귀중

*보험계약자 :	(인)
*피보험자(보험대상자) :	(인)

담당자		홈페이지	www.idbins.co.kr

회사보관용